

20210407

재보궐선거 홍보매뉴얼

더불어민주당

20210407

재보궐선거 홍보매뉴얼

이 책자는 2021년 4월 7일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홍보매뉴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로고 규정에 따라 선거홍보에 있어 일관성 있는 이미지로 유권자들에게 인상적이고 친숙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제작물 지침을 정리했습니다.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활용한 홍보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이 반영된 일관성 있는 홍보를 위해 매뉴얼 지침과 표준에 따라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매체대응을 해주시길 권장합니다.

이 매뉴얼은 더불어민주당 고유의 재산이자 선거 홍보매뉴얼로서 선거에 필요한 경우에만 복제와 열람을 허용합니다.

문의 : 더불어민주당 미래소통국
T. 02,2630,0082 F. 02,2630,7050



더불어민주당
로고 및 선거 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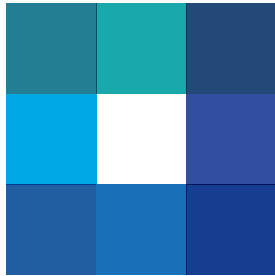
시그니처 기본형 / 심벌 · 로고 / 슬로건 의미



더불어민주당

심벌 · 로고 - 응용

당 심벌 (응용)



가로형 (응용)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2줄형 (응용)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



C 77	C 98	C 90	C 100
M 10	M 83	M 80	M 87
Y 35	Y 37	Y 0	Y 0
K 0	K 2	K 0	K 0



C 86	C 92	C 85	C 83
M 54	M 69	M 10	M 40
Y 0	Y 8	Y 0	Y 35
K 0	K 0	K 0	K 3

슬로건 흰배경 (응용)

1.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2.

대한민국
회복과 도약

- 국민의 일상 회복, 대한민국 도약과 혁신을 완수할 집권여당 후보 강조
- 코로나 방역 성공과 일상 회복으로 4.7 재보선 승리와 2022년 대선 승리의 디딤돌

슬로건 파란배경 (응용)

1.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2.

대한민국

회복과 도약



홍보 인쇄물

명함 / 선거벽보 / 책자형 선거공보 / 점자형 선거공보

후보자 명함 -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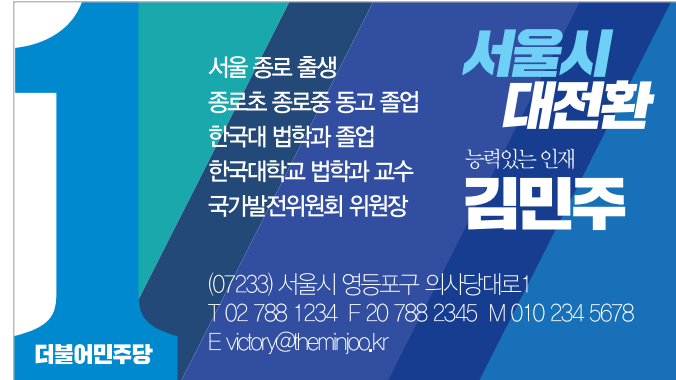
- | | |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명, 전화번호•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 규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
| 배부 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 3. 25 ~ 4. 6(선거운동 기간중) |
| 배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후보자가 지정한 1명 <p>*활동보조인: 장애인 후보자 자신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p> |
| 관련법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제93조 1항 1호 |

후보자 명함 – 예시 A안

후보자 명함 A안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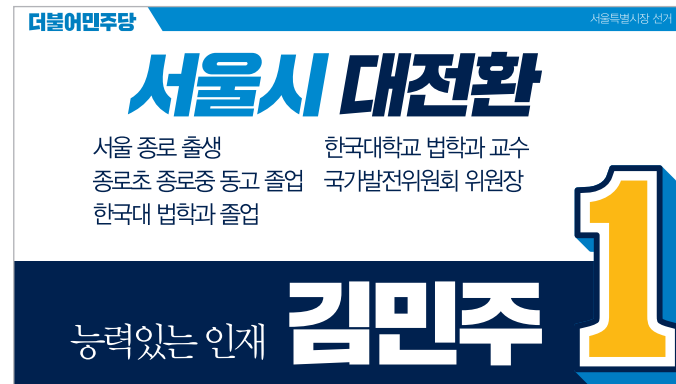
뒷면



후보자 명함 B안 앞면



뒷면



후보자 명함 – 예시 B안

후보자 명함 C안 앞면



뒷면



후보자 명함 D안 앞면



뒷면



선거벽보 - 규정

- | | |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후보자의 성명 · 사진 · 기호 · 경력,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 · 정책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 규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길이 53cm, 너비 38cm |
| 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100g/m²이내, 종이 1종 |
| 제출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1. 3. 24(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 제출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 관할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후보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대로 선거벽보를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해야함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수량을 가산 할 수 있음)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선거벽보를 제출한 경우 기척불가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 · 기호 · 소속 정당명과 경력 · 학력 · 학위 · 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직선거법 제64조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 제121조 |

선거벽보 A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대전환**

1

능력있는 인재
서울 종로 출생
종로초 종로중 동고 졸업
한국대 법학과 졸업
한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민주

선거벽보 B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대전환**

1

능력있는 인재
서울 종로 출생
종로초 종로중 동고 졸업
한국대 법학과 졸업
한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민주

선거벽보 C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대전환**

1

능력있는 인재

서울 종로 출생
종로초 종로중 동고 졸업
한국대 법학과 졸업
한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민주

선거벽보 D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대전환**

1

능력있는 인재

서울 종로 출생
종로초 종로중 동고 졸업
한국대 법학과 졸업
한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민주

선거공보 – 규정

- | | |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면 : 명칭(책자형 선거공보), 선거명, 선거구명• 둘째면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 게재 |
| 규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면수 : 지방자치단체장(12면 이내), 지방의회의원(8면 이내) |
| 제출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 3. 26(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 제출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는 제외)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 접수불가• 둘째면이 아닌 다른 면(둘째면이 부족하여 셋째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를 게재하거나, 그 둘째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 선거공보의 규격·제출기한을 위반한 경우 접수 불가 |
| 관련법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선거법 제 65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 |

선거공보 – 표지면 예시 A안

선거공보 A안



서울시 대전환

살기좋은 서울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1

결어온 길

- 서울 종로 출생
- 종로초 종로중 동고 졸업
- 한국대 법학과 졸업
- 한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T 02 788 1234 F 20 788 2345 M 010 234 5678
E victory@theminpokr

능력있는 인재

- 서울 종로 출생
- 종로초 종로중 동고 졸업
- 한국대 법학과 졸업
- 한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민주

선거공보 B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대전환

1


능력있는 인재

- 서울 종로 출생
- 종로초 종로중 동고 졸업
- 한국대 법학과 졸업
- 한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민주

선거벽보 C안

선거벽보 D안



**서울시
대전환**

살기좋은서울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1

결어온 길

서울 종로 출생
종로초 종로중 동고 졸업
한국대 법학과 졸업
한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T 02 788 1234 F 20 788 2345 M 010 234 5678
E victory@theminpokr

능력있는 인재
서울 종로 출생
종로초 종로중 동고 졸업
한국대 법학과 졸업
한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대전환**



1

능력있는 인재
서울 종로 출생
종로초 종로중 동고 졸업
한국대 법학과 졸업
한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민주



서울시 대전환

살기좋은 서울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꺾어온 길

1

서울 중로 출생
중요직 공역 중 10년
한국외대 법학 졸업
한국외대고 영어과 교사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

(070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1
7102 788-1534 / 703-788-2345 / 010-234-9578
E:vkxy@naver.com

능력있는 인재
당 지시는
서울 중로 출생
중요직 공역 중 10년
한국외대 법학 졸업
한국외대고 영어과 교사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대전환

살기좋은 서울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꺾어온 길

1

서울 중로 출생
중요직 공역 중 10년
한국외대 법학 졸업
한국외대고 영어과 교사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민주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국회의원선거

1. 인적사항

성명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직업	학력	경력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남	1980. 4. 30	종교학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국립중앙도서관위원 국립중앙도서관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감사관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만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현역복무	복합복무
1,000,000	2,000,000	3,000,000	30,000	복합사망 결혼	복합사망 결혼

3. 최근 5년간 세금납부, 채납실적, 전과 기록

구분	납세액	채납실적		전과 기록
		채납실적액	잔액	
계	333	0	0	채납사망 결혼
후보자	333	0	0	
배우자	333	0	0	
직계존속	0	0	0	

4. 소명서



서울시가 달라진다

서울시 대전환

살기좋은 서울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살기좋은 서울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서울시 대전환

살기좋은 서울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살기좋은 서울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살기좋은 서울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서울시 대전환

살기좋은 서울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점자형 선거공보 - 규정

- | | |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면 : 선거명 · 선거구명, 후보자성명을 한글 및 점자와 함께 게재•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과 반드시 동일해야함 |
| 규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이 27cm, 너비 19cm• 면수 :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면수 이내 |
| 제출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 3. 26(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선거법 제65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 |

선거공약서 – 규정

- | | |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각 사업목표 · 우선순위 · 이행절차 · 이행기한 · 자원조달방안)을 게재한 1종• 후보자의 성명 · 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 · 학력 ·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후보자별 제한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음• 앞면 : "선거공약서" 라고 표시, 선거명, 후보자성명,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함• 뒷면 : "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 인쇄소의 명칭 · 주소 · 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
| 규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이 27cm, 너비 19cm• 면수 : 시 · 도지사선거 (16면 이내), 자치구 · 시 · 군의 장선거(12면 이내) |
| 배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
| 제출시기 및 제출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 · 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신고•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 제출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우편발송(접지형 선거공약서는 제외) · 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의 방법으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음 |
| 관련법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선거법 제66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1조 |



주요 선거홍보물

간판 · 현판 / 현수막 / 어깨띠 / 소품 / 유세차량

간판 / 현판 - 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 및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명, 전화번호•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없음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 및 게시 불가•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 · 게시할 수 없음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선거법 제61조 6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 3항, 4항

간판 / 현판 - 예시

간판 A안



간판 B안



현판 A안



현판 B안



* 적용폰트 : sandal 격동고딕 / 윤고딕 320, 360

외벽 현수막 – 규정

- | | |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의 성명 · 사진 · 기호, 소속정당명 및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명, 전화번호•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 |
| 규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없음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 및 게시 불가•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 · 게시할 수 없음 |
| 관련법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선거법 제61조 6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 3항, 4항 |

외벽 현수막 - 예시

외벽 현수막 A안



외벽 현수막 B안



거리 현수막 – 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의 성명 · 사진 · 기호, 소속정당명 등•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m² 이내, 천으로 제작
게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수막 게시시 관할 구 · 시 · 군위원회가 교부한 표지 첨부 · 게시• 현수막 교체 시 종전 현수막에 붙였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첨부해야함•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 · 시설에 고정하여 게시해야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드벌룬 · 네온사인 · 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사용불가•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식의 게시불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식의 게시불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하는 방식의 게시불가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선거법 제67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현수막 A안



현수막 B안



어깨띠 및 소품 - 규정

- | | |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의 사진 · 성명 · 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 규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깨띠 :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마스크트, 표찰 · 수기 그 밖의 소품 :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
| 착용주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
| 사용기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 3. 25 ~ 4. 6(선거운동 기간 중) |
| 관련법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선거법 제68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 |

어깨띠 — 예시

어깨띠 A안



어깨띠 B안



어깨띠 C안



어깨띠 D안



소품 - 예시 A안



막대풍선



EYE 쿠파치

<제작문의>
- 헬로우미디어 (아이 쿠파치)
Tel) 043-296-2218



에어핑거



색안경

소품 - 예시B안



LED 조명스틱

〈제작문의〉
- 스타엔트리 (LED 조명스틱)
Tel) 070-8955-7495



캐릭터형 캐리커처
및 프린팅 와팬



〈제작문의〉
- 센트럴 (뱃지형 프린팅 와팬)
Tel) 010-5015-1348



돌돌이 배너(손피켓)



〈제작문의〉
- 돌돌이 (돌돌이 배너 손피켓)
Tel) 1588-2445

유니폼 : 티셔츠, 모자 – 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 간단한 구호 등
착용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후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제작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윗옷 : 3만원 이내(인쇄비 : 6천원 이내)모자 : 7천원 이내(인쇄비 : 2천원 이내)
사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1. 3. 25 ~ 4. 6(선거운동 기간 중)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직선거법 제68조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

유니폼 : 티셔츠, 모자 - 예시

반팔



앞



뒤

모자



어깨띠 착용



유니폼 : 점퍼 - 예시

점퍼



앞



뒤

유세차량 및 확성장치 – 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음•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시 후보자와 선거연락소(시·도지사선거 선거연락소에 한정) 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 방송가능. 이 경우 녹음기 및 녹화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표지부착 필수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 3. 25 ~ 4. 6(선거운동기간중)
자동차와 확성장치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지사선거 :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후보자마다 1대·1조
녹화기 화면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 : 10m² 이내•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선거 연락소용 : 5m² 이내• 자치구·시·군 장선거 후보자용 : 5m² 이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용 : 3m²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설·대담 : 오전 7시 부터 ~ 오후 10시 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한 연설·대담 : 오전 7시 부터 ~ 오후 9시 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 오전 6시 부터 ~ 오후 11시 까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산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 연설·대담과 대담·토론회(방송시설 이용 경우 제외)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는 개최불가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선거법 제79조, 제91조, 제102조, 제216조 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

유세차량 - 차량 예시

